

# 01

## 학교 건립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켜다

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조항 규제 개선

추진부서 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 031-345-2252

### 개선배경



- 도시개발사업 관련 학교시설은 교육청과 도시개발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
  - 학교시설 설치는 교육청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, 경기도 조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기도에서는 감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학교 설치와 개발 사업이 지연됨

※ 관련규정 : 「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제2조(부담금의 부과·징수 등)

### 개선내용



#### 개선전

▶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 
부담금의 면제 권리가 경기도에  
있어 학교시설 기부채납 불가



#### 개선후

▶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 
부과·징수 권리가 시장·군수에게  
위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 
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 및  
학교시설 확충

- 의왕시에서 경기도에 건의하여 「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내 부담금의 부과·징수 등 면제에 관한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변경('18.1)

## 개선효과



-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진행  
※ 2018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152개(국토교통 통계기준)
- 부담금의 부과부터 징수 및 면제 업무를 일원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완공 기간을 단축
-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지원 없이 학교시설을 적기에 확충  
※ 5,65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(2018년 경기도 사업을 의왕시 규모로 추정)

